
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
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2023. 2.

농 립 축 산 식 품 부
(농 지 과)

1. 개정이유

-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농지연금 가입자 사망 시 연금 수급권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인하하여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지원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
- 타 법률 명칭 변경과 그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농지연금사업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연금 수급권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 인하(안 제19조의 11)

- 농지연금 수급권 보장을 위해 승계형 가입이 가능한 배우자 연령 기준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인하하여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에게 종신 까지 안정적인 농지연금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”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등 합의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 타 : 붙임(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)
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19조의10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별공시지가
2.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
평가한 금액

제19조의11 중 “60세”를 “55세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매매가격의 결정기준) ① 공사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매하는 농지의 가격은 매매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되,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시지가와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.	제9조(매매가격의 결정기준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----- ----- ----- -----.
제19조의10(담보농지 가격의 평가 방법) 영 제19조의10제1항에 따 른 담보농지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단위면적당 담보농지 가격 중 지원대상자가 선택한 가격에 농지 면적과 평가율을 곱하여 산출한다. 이 경우 담보 농지 가격의 평가율은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여 인터넷 홈 페이지에 게시한다.	제19조의10(담보농지 가격의 평가 방법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
1.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별공시지가	1.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별공시지가
2.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	2.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 법인등이 평가한 금액

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

제19조의11(배우자의 범위) 영 제
19조의10제3항제2호 본문·제3
호 및 제19조의13제1항제1호가
목·나목에서 “농림축산식품부
령으로 정하는 배우자”란 영 제
19조의9제1항에 따라 농업인이
농지연금의 지원을 신청한 연도
의 말일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
상인 배우자로서 농지연금 지원
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당시부
터 계속하여 영 제19조의10제3
항제1호의 농업인과 혼인관계
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.

제19조의11(배우자의 범위) ----

----- 55세 ----

-----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	
연 락 처	(044) 201 - 1742